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2. 11. 8 선고 2022가단2012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9. 27.

판 결 선 고 2022. 11. 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1. 3.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어선에 관하여 2021. 3. 12. 마친 어선원부상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구분	약정일	보증기간	보증원금	대출예정금액
제1신용보증약정	2015. 6. 9.	대출일로부터 10년	163,200,000원	192,000,000원
제2신용보증약정	2016. 10. 20.	2016. 10. 25.~2021. 10. 25.	51,000,000원	60,000,000원
제3신용보증약정	2019. 6. 19.	2019. 6. 19.~2021. 6. 19.	22,950,000원	27,000,000원
제4신용보증약정	2019. 10. 14.	2019. 10. 14.~2021. 10. 14.	198,000,000원	220,000,000원

나. C는 D조합으로부터 2015. 6. 15. 제1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192,000,000원을, 2016. 10. 25. 제2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60,000,000원을, 2019. 6. 19. 제3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27,000,000원을, 2019. 10. 14. 제4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2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C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

다. D조합은 2021. 2. 25.경 C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포함하여 대출금 합계 491,568,000원에 관하여 2021. 3. 8.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C는 2021. 3. 12. 남편 E의 형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변경등록을 마쳤다.

마. 원고는 2021. 6. 21. D조합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41,287,240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51,618,621원, 제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3,222,997원, 제4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063,816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도군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어선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원고는 전복양식업을 위해 어선이 필요하여 C로부터 이 사건 어선을 매수하였는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1. 3. 12. 체결되었고, 원고가 2021. 6. 21.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2015. 6. 9.경부터 2019. 10. 14.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체결되어 있었고, D조합은 2021. 2. 25.경 C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에 관하여 2021. 3. 8.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통지를 하여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1. 6. 21. 원고가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C의 채무초과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는 D조합에 대하여 합계 대출금 합계 491,568,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어선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바,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어선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피고는 C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어선을 처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5, 6,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21. 1. 20. F로부터 4,000,000원을 이자 400,000원, 변제기 2021. 6.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 G은 2018. 11. 30. 공급받는 자를 E으로 하여 전복치패 75,900,00원에 관한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20. 4. 1. 공급받는 자를 C로 하여 전복치패 14,500,000원에 관한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C는 2021. 6. 25. F에게 4,4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1. 6. 24. G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C는 이 사건 어선의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가 아닌 E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도 한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선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내지 17호증, 을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는 C의 남편인 E의 형이고, 피고, C, E은 H어촌계와 양식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고 양식업을 하여 왔다.
-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50,000,000원을 초과하는 54,12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에게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돈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③ 피고는 C에게 2021. 12. 10. 2,000,000원, 2021. 12. 20.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C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④ 피고는 E의 부탁으로 2011. 12. 1.경 D조합으로부터 29,4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29,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는데, E이 2020년경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피고가 직접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
- ⑤ 피고의 동생인 E 소유의 전남 완도군 I 대 1,464㎡에 관하여 2020. 11. 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2021. 5. 13.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21. 6. 30.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C와 그 배우자인 E의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어선을 구매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나 현재 이 사건 어선을 사용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할 만한 자료나 사정이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2021. 3. 12. 마친 어선원부상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준

별지

어선번호

어선명칭

어선종류 동력선

선적항 완도군 금일읍

선체제질 FRP

총톤수 7.31톤

기관외 종류, 마력 및 대수 가솔린선외기 기관 200.000 마력 2대

추진기의 종류와 수 나선일체식 추진기 2기

끝.

